#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정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74

발의연월일: 2020. 7. 7.

발 의 자:홍정민·이용우·한준호

안민석 · 서동용 · 심상정

김홍걸 · 김영배 · 신현영

박성준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증축하기 위해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공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취득세를 300% 중과하고,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를 5년간 500% 중과하도록 되어 있음.

수도권 북부의 일부 지역은 지난 70여년 간 남북분단 체제 아래에서 여러 규제와 급격한 정세변화로 지역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서울과 인접해있다는 이유로 과밀억제권역으로까지 분류되어 지역발전에 필수적인 기업유치에 난관을 겪고 있음.

이에 과밀억제권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공장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재산세 중과 대상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접경지역을 제외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경기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꾀하려 하는 것임(안 제13조제1항 및 제111조제2항).

법률 제 호

###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과밀억제권역에서"를 "과밀억제권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서"로 한다.

제111조제2항 중 "유치지역과"를 "유치지역,"으로, "공업지역"을 "공업지역과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으로한다.

#### 부 칙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
|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          | 중과) ①              |
| 법」 제6조에 따른 <u>과밀억제권</u> | 과밀억제               |
| <u>역에서</u>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 권역(「접경지역 지원 특별     |
|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         |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   |
| 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         | 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
| 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         | <u>서 같다)에서</u>     |
| 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        |                    |
| 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                    |
|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         |                    |
| 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         |                    |
| 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         |                    |
| 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        |                    |
| 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        |                    |
| 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         |                    |
|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         |                    |
| 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         |                    |
| 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                    |
|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        |                    |
| 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         |                    |
| 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         |                    |
| 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                    |
|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                    |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 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 ② ~ ⑧ (생 략)
- 제111조(세율) ① (생 략)
  - ②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 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 단지 및 유치지역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 신설·증설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최초의 과세기준일부터 5년간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0에 해당하는 세율로 한다.

③ (생 략)

| ② ~ ⑧ (현행과 같음)       |
|----------------------|
| 세111조(세율) ① (현행과 같음) |
| 2                    |
|                      |
|                      |
|                      |
|                      |
| 유치지역,-               |
|                      |
| 고시키서기 「키커키           |
| <u>공업지역과 「접경지</u>    |
| 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
| 에 따른 접경지역            |
|                      |
|                      |
|                      |
|                      |
|                      |
|                      |
| ·<br>③ (현행과 같음)      |
| ○ (234 を百)           |